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박현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과

의안 제631호로 2025년 11월 7일 박현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, 통일
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, 기념물 설치 등에 관한
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사회통합, 문화행사, 인권 관련
기념물 설치·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함. 또한, '북한이탈주민의 날'
공식 기념행사 및 지원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과
상징적 지원을 높임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11.7.~11.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고,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, 안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지원 사항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종합의견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여,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(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)들은 한국 국적은 갖지만, 법률상 “보호대상자(법 제2조제2호)¹⁾”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.
- 그러나 최근에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2024.10.22. 일부개정)²⁾되면서, 교육지원 대상을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보호대상자”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
2) 제24조(교육지원)

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, 출생지,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기존 ‘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’에서 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’ 까지도 확대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,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에서 비보호대상자이지만 관내 주민인 자들을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.
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에 △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, △의료 및 돌봄 지원, △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, △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, △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, △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형물·동상 등 기념물 설치·지원 및 관리 등을 구체화하거나 신설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△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지원, △북한이탈주민 대상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됨.
-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,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,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들을 세분화하는 것은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.
- 아울러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

시행(1997.7.14.)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4일이 ‘북한 이탈주민의 날’로 지정되었으며, 동법 제4조의4제2호³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3) 제4조의4(북한이탈주민의 날)

-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- “보호대상자”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
제4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의4(북한이탈주민의 날)
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